

# 음반산업의 세무실무

작성일자 : 2014.10.07.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 I. 개요

음반 등의 제작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자는 녹음 대상을 선발하여 그에 맞는 곡을 작곡자, 편곡자 등로부터 받고 연주인을 섭외하여 음원의 녹음·제작을 총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이후에 CD등의 유형의 음원의 경우 음반유통사에 복제제작이라는 제작 단계를 거치게 된다.

## II. 음반산업의 코드정리

### ① 223001 (기록매체 복제업)

- 중분류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세분류명: 기록매체 복제업

- 상업용 음반, 오디오 복제생산 / 비디오 기록매체를 복제한 그 복제품 / 영화비디오 복제 /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 기타의 기록매체를 복제하여 그 복제품을 생산 /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 기록매체복제 /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 단순경비율 : 89.7

- 기준경비율 : 15.3

### ② 513250 (악기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 중분류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세분류명 :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 각종악기 레코드, 녹음테이프, CD, LCD, VTR테이프등

- 단순경비율 : 93.4

- 기준경비율 : 07.00

### ③ 52398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 중분류명 : 소매업 / 세분류명 :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 레코드판, 음향 및 영상테이프(녹음테이프, VTR테이프등)공테이프 등

- 단순경비율 : 90.10

- 기준경비율 : 07.70

### ④ 924901 (녹음시설운영업)

- 중분류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명: 오디오물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에 녹음 또는 테이핑하는 산업활동

- 단순경비율 : 70.30

- 기준경비율 : 33.70

### Ⅲ. 음반산업의 세무실무

#### 1. 부가가치세 실무

##### (1) 과세대상 여부

음반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도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도서에 내용이 그대로 취입된 녹음테이프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2) 테이프와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학습용 비디오테이프 또는 음반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테이프 대여와 별도로 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서삼46015-10590, 2002. 04. 11).

##### (3) 전자책이 도서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도서의 형태로 공급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4)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에 대한 과세여부

음반기획사업자가 자기의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부가 46015-514, 1995. 03.17).

#### 2. 법인세·소득세 실무

##### (1)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①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② 음반 및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전속계약금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다. 다만, 연예인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미판매 재고에 대한 처리

음반 등의 경우 도매상에게 판매한 음반은 미판매시에 일정율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회수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회수일에 수정세금계산서(반품)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4) 음반의 폐기처리

미판매된 음반에 대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 폐기에 따른 입증책임은 음반회사에 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일자, 폐기수량, 사진촬영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 (5) 음반 등으로 접대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디오영상물, 음반 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된다.

## V.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 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07. 8. 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14. 2. 21. 개정)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2010. 2. 18. 신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2010. 2. 18.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입장권 구입 (2010. 2. 18. 신설)
  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12. 2. 2. 신설)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14. 2. 21.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2.2.17, 2013.7.16 개정)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VI. 관련 질의**

법인-3032, 2008.10.23.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